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한화진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재활용의무 대상 제품·포장재인 발광다이오드(LED) 조명 중 “평판형”을 제외하고,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을 감경하며, 시·도지사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. . . ~ .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제1호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“환경부장관 또는 유역환경청장·지방환경청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”을 “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

가.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(업종은 커피·음료·제과제빵·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)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

나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가목·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

2.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목에서 정한 규모

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, 매출규모, 매장 수,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

별표 6의 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

나. 발광다이오드 조명	
1) 전구형(電球形)	kg당 816원
2) 직관형(直管形)	kg당 616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.

1.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(동 지역): 이 영을 공포한 날
2. 제1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: 영 시행일 이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지역의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 업종 등) ① ~ ③ (생 략)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1.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<u>환경부장</u> <u>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</u> 2. 삭 제 3. · 4. (생 략) 제17조(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) ① · ② (생 략)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·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<u>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</u> <u>여 고시하는 사업자를</u> 말한다. 1.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가 맹사업(업종은 커피 · 음료 ·	제8조(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 업종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환경부장</u> <u>관 또는 유역환경청장·지방환</u> <u>경청장</u> ----- 3. · 4. (현행과 같음) 제17조(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자를</u> ----- -----. 1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</u> <u>당하는 자 중 환경부장관이</u> <u>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</u>

제과제빵·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)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

2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가목·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

가.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(업종은 커피·음료·제과제빵·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)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

나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가목·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

2.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목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, 매출규

<u>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</u> <u>3.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, 매출 규모,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</u> ④ (생략)	<u>모, 매장 수,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</u> <삭 제> ④ (현행과 같음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355